

『御定洪翼靖公奏藁』의 편찬과 간행 및 반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Compilation,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Eojeonghongikjeonggongjugo*

강 순 애 (Kang, Soon Ae)**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어정홍익정공주고』의 반사 |
| 2. 『어정홍익정공주고』의 편찬 | 5. 결 론 |
| 3. 『어정홍익정공주고』의 간행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연구는 정조의 어찰에 나타난 『어정홍익정공주고』의 기록들과 기존 연구 및 현존본을 조사하여 편찬자 및 편찬과정을 밝히고, 『순조실록』, 『내각일력』의 기록 및 현존본을 조사하여 간행 및 반사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어정홍익정공주고』의 편찬, 간행 및 반사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정홍익정공주고(御定洪翼靖公奏藁)』는 익정공 홍봉한(洪鳳漢, 1713~1778)의 영조조 국정운영에 대한 상소와 영조의 비답을 모은 책이다. 정조는 24년(1800)에 홍낙임과 함께 주자의 『축공유사(祝公遺事)』를 모방하여 홍봉한의 연대제주와 이에 대한 비답을 모아 35권 6류, 59목, 별고 1편으로 편찬하였다. 이 책의 편찬자는 정조와 홍낙임이고, 편찬과정에 홍낙임의 아들 홍취영과 정조의 작은 외할아버지인 홍용한도 관계하였으며, 언문의 번역에는 해경궁의 뜻이 반영되었다.

『어정홍익정공주고』의 간행은 순조 즉위년(1800) 8월 11일 정순왕후의 명으로 내각에 간행을 지시했지만, 그해 8월 20일 벽파 신료들의 반대로 미루어졌다. 순조 12년(1812) 이후에 재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순조 15년(1815) 3월 6일 내각에서 정리자로 인출되었다.

『어정홍익정공주고』는 순조 15년(1815) 3월 6일 반사되었다. 반사본에 ‘奎章之寶’를 찍어 오쳐사고, 규장각, 내각, 옥당, 춘방에 백면지로 찍은 책이 각각 1건씩 반사되었고, 원임제학 영의정 김재찬을 포함하여 20명의 신하에게 백지로 찍은 책이 각각 1건씩 사급되었다. 반사본 중에는 현존본들이 남아 있다. ㄱ1146 본에는 ‘奎章之寶’와 ‘內閣’ 장서인이 찍혀 있어 내각에 반사된 것임을 알 수 있고, ㄱ3915 본에는 ‘奎章之寶’ 장서인과 표지 이면에 ‘鼎足’의 목서기가 있고, ㄱ1924 본에는 ‘奎章之寶’ 장서인과 표지 이면에 ‘太白’의 목서기가 있어 각각 정족산사고와 태백산사고에 반사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ㄱ1173 본에는 ‘奎章之寶’와 ‘奎書珍籍’ 장서인이 찍혀 있어 규장각에 반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要語: 『어정홍익정공주고』, 익정공 홍봉한, 홍봉한, 정조, 홍낙임

* 본 연구는 2019년도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도서관정보문화트랙 교수(h4085@hansung.ac.kr)

투고일: 2020년 2월 20일 최초심사일: 2020년 2월 25일 게재확정일: 2020년 3월 11일

서지학연구, 제81집, 33-54,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1.33>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records, existing studies and existing copies of *Eojeonghongikjeonggongjugo* which appears in King Jeongjo's letters in order to throw light on the compiler and the compilation process. The paper also examines the records and existing copies of *Sunjo Sillok* and *Naegak Illyeok* and analyzes their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with the aim of analyzing the processes of compilation,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Eojeonghongikjeonggongjugo* in a systematic way. The results of the study as follows.

Eojeonghongikjeonggongjugo is a book that collected Ik Jeong-gong Hong Bong-han (1713~1778)'s petitions for King Yeongjo's state affairs administration and Yeongjo's answers to those petitions. In the 24th year of his reign, King Jeongjo along with Hong Nak-im imitated Zhu Xi's *Chukgongyusa* by collecting Hong Bong-han's yeondaejaeju and Yeongjo's answers to them and compiling them into 35 books of 6 types, 59 categories and 1 separate edition. The compilers of this work were Jeongjo and Hong Nak-im. Hong Nak-im's son Hong Chui-yong and Jeongjo's great-uncle Hong Yong-han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compilation, and the translation of the written and spoken languages reflected the intentions of Queen Hyegyeong.

Queen Jeongsun ordered the Naegak to publish *Eojeonghongikjeonggongjugo* on August 11 in the year 1800 when Sunjo ascended the throne, but the publication was postponed due to the opposition of the Byeokpa retainers on August 20 of the same year. It is estimated that another discussion for the publication took place after the 12th year of Sunjo's reign, and that the Naegak released it in the jeongritype cast on March 6 in the 15th year of Sunjo's reign.

Eojeonghongikjeonggongjugo was distributed on March 6 in the 15th year of Sunjo's reign (1815). The distributed editions were imprinted with the word 'Kyujangjibo' and printed in Baekmyunji with one edition each distributed to Ocheosago, Kyujanggak, Naegak, Okdang and Chunbang. A copy printed in baekji each was also given to 20 retainers including Wonimjaehak Yeonguijeong Ki Jae-chan. Some of the copies distributed at the time still exist. We can tell that the Gyu1146 edition was distributed to the Naegak because it is stamped with 'Kyujangjibo' and 'Naegak.' Similarly, the Gyu3915 edition is stamped with 'Kyujangjibo' with 'Jeongjok' in ink letters on the reverseside of the coverpage, while the Gyu 1924 edition is stamped with 'Kyujangjibo' with 'Taebaek' in ink letters on the reverse side of the coverpage, showing that they were distributed to Jeongjoksan Archives and Taebaeksan Archives respectively. The Gyu1173 edition is stamped with 'Kyujangjibo' and 'Kyuseojinjeok' showing that it was distributed to the Kyujanggak.

Key words: *Eojeonghongikjeonggongjugo*, Ik Jeong-gong Hong Bong-han, Hong Bong-han, King Jeongjo, Hong Nak-im

1. 서론

『어정홍익정공주고(御定洪翼靖公奏藁)』는 익정공 홍봉한(洪鳳漢, 1713~1778)의 영조조 국정 운영에 대한 상소와 영조의 비답을 모은 책이다. 정조는 24년(1800)에 홍낙임과 함께 주자의 『축공유사(祝公遺事)』를 모방하여 홍봉한의 연대제주와 이에 대한 비답을 모아 35권 6류, 59목, 별고 1편으로 편찬하였다. 규장각이 순조 15년(1815)에 정리자로 간행하여 반사하였다.

이 책은 영조조의 권신 홍봉한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당대 현안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영조에게 올리고 영조가 이를 통해 계책을 채택하여 정사에 반영한 내용이지만, 정조와 홍낙임이 깊게 관여하여 편집되었기 때문에 영조, 사도세자, 정조에 이르는 정국운영의 의미와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책이다. 이 책은 전례(典禮), 출척(黜陟), 법기(法紀), 재부(財賦), 군려(軍旅), 영선(營繕)의 6가지 류목으로 나누어 편집되었으며 권머리에는 정조 어제의 총서(總序)가 있고 각 류에는 정조 어제의 서(序) 그리고 각 목(目)에는 정조어제의 인(引; 서문)을 붙였다. 이 서문은 『홍재전서』에서 3권이나 차지할 정도로 분량이 많다. 또한 정조 어제의 서와 인만을 모은 『어제익정공주고서인(御製翼靖公奏藁敍引)』 필사본 3책(규1897)이 남아 있다.

이 책의 편찬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서울: 동박물관, 2009)와 『정조어찰첩: 『壬辰宸札(임진예찰)』과 『己未御札(기미어찰)』』(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에 상세하게 실려 있다.¹⁾ 두 간찰집에는 편찬에 관한 내용이 단편적으로 산만하게 실려 있고 편지글 형식이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김덕수(2013)의 연구인 『송사』의 개수와 『송사전』의 내용 및 『익정공주고』에서는 편지글에 실린 『어정홍익정공주고』의 편찬 내용을 일차적으로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다.²⁾

『어정홍익정공주고』는 정조 24년(1800)에 편찬을 마치고 순조 초기에 바로 간행하려 하였으나 벽파의 반대에 부딪혀 간행되지 못하였고, 순조 15년(1815)이 되어서야 간행될 수 있었다. 『순조실록(純祖實錄)』에 그에 관한 일부 내용이 들어 있어 참고가 된다. 이 책은 순조 15년(1815) 정리자로 찍어 반사되었다. 반사에 대한 기록은 『내각일력(內閣日曆)』에 그 내용이 남아 있고, 현전하는 문헌을 통해 일부 반사 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정홍익정공주고』의 편찬, 간행 및 반사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정조의 어찰에 나타난 『어정홍익정공주고』의 기록들과 기존 연구 및 현존본을 조사하여 편찬자 및 편찬과정을 분석하고, 『순조실록』, 『내각일력』의 기록 및 현존본을 조사하여 간행 및 반사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의 관련 기록을 연계하여 편찬, 간행 및 반사가 어떤

1)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서울: 동박물관, 200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정조어찰첩: 『壬辰宸札』과 『己未御札』』(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2) 김덕수, “『정조어찰첩』을 통해서 본 정조의 서적 편찬 활동,” 『정조어찰첩: 『壬辰宸札』과 『己未御札』』(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18-34.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향후 서지학, 기록관리학, 역사학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2. 『어정홍익정공주교』의 편찬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서울: 동박물관, 2009)와 『정조어찰첩: 『임진예찰』과 『기미어찰』』(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에는 정조가 홍낙임에게 보낸 어찰들이 실려 있는데, 『어정홍익정공주교』의 편찬에 주도적 역할을 한 편찬자와 편찬과정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실려 있다.

2.1 편찬자

정조 24년(1800) 4월 27일의 어찰 별지에 의거하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³⁾

첫째, 정조는 주자가 그의 외할아버지 축확(祝確)의 실기를 편집한 『축공유사』를 모방하여 홍봉한의 연대(筵對: 경연에서 임금의 질문에 대답한 것)와 주문(奏文: 임금께 상주한 것) 중 기록할만한 큰 업적과 좋은 내용을 모으고 『상서(尙書)』와 『기거주(起居注)』 및 중앙과 지방의 역사적 사실에 관하여 쓴 글들을 모두 열람하여 6류(類), 59목(目)으로 나누고, 별고(別攷) 1편을 추가하였음을 밝혔다.

둘째, 외삼촌인 홍낙임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토의와 수정을 거쳐 3년이 걸려야 비로소 완성하고 제목을 『실기(實紀)』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전례(典禮)를 첫머리에 실어 오용(五庸)을 밝히고, 출척(黜陟: 관리의 승진과 강등)을 실어 삼고(三考: 관리의 평가에 세 차례 고과를 거쳐 승강과 상벌을 결정하는 것)를 밝혔으며, 이어 법기(法紀)로 육익(六翼: 구정(九鼎) 중 귀가 달린 여섯 개의 정)을 모방하고, 이어 재부(財賦)로 팔정(八政: 행정의 여덟 분야)을 중시했고, 이어 군려(軍旅)로 구부(九賦: 주나라대 아홉 가지 부세(賦稅))를 닮았으며, 영선(營繕)을 끝에 붙여 모든 용도에 대비했다. 거슬러 고대까지 올라간 것은 그 근원을 밝힌 것이고, 미루어 지금에 이르는 것은 그 내력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판화(判花: 결재되어 화압이 된 공문서), 시초(視草: 담당 관리의 일차 수정을 거친 임금의 교서 초고), 구호(九呼: 입으로 불러 전하는 사항), 수첩(手帖)까지도 모두 포함시킨 것은 대개 그 강령을 들어 요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정조, “정조 24년 4월 27일 어찰별지, 翼靖公實紀總序,”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서울: 동박물관, 2009), 132-141.

“... 予嘗慕朱夫子書祝公遺事 哀集公筵對諸奏偉績閑休之可紀者 備閱尙書起居注及中外掌故文字 分門入目 目以類會 凡爲類者六 爲目者五十有九 又有別攷一篇 與叔舅氏 往復商訂 三易燧而始就焉 名之曰實紀 首之以典禮 章五庸也 次之以黜陟 明三考也 繼之以法紀 倣六翼也 承之以財賦 重八政也 因之以軍旅 修九賦也 附之以營繕 備百用也 溯而上于古 昭其委也 推而抵于今 詳其來也 統而及於判花始草口呼手拈之文蓋亦提其嶺而攄其要也 ...”

위의 내용에 의거하면, 정조는 주자가 편집한 축확의 『축공유사』를 모방하여 『어정홍익정공주고』를 6류, 59목, 별고 1편으로 구성하였다. 규장각에 남아 있는 규1146의 『어정홍익정공주고』를 참조하여 그 내용 구성에 대해 <표 1>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어정홍익정공주고』의 내용 구성

35 권	6 류	59 목
권1~권8	典禮類	권1 典禮類(4): 廟社, 殿宮, 陵寢, 園墓 권2 典禮類(2): 諸壇, 享祀 권3 典禮類(4): 耜田, 行幸, 朝儀, 供獻 권4 典禮類(2): 贊頌, 講說 권5 典禮類(1): 陳戒 권6 典禮類(3): 學校, 待士, 科試 권7 典禮類(3): 憫恤, 優老, 旌贈 권8 典禮類(2): 使价, 交隣 권1~권8 典禮類(21目)
권9~권12	黜陟類	권9 黜陟類(2): 薦舉, 差除 권10 黜陟類(1): 官方 권11 黜陟類(2): 政注, 甄錄 권12 黜陟類(2): 伸救, 飭勵 권9~권12 黜陟類(7目)
권13~권14	法紀類	권13 法紀類(2): 刑獄, 體例 권14 法紀類(1): 申禁 권13~권14 法紀類(3目)
권15~권27	財賦類	권15 財賦類(2): 田政, 大同 권16 財賦類(2): 輸漕, 年分 권17 財賦類: 還餉 上 권18 財賦類: 還餉 下 권17~권18(1) 권19 財賦類(1): 賑濟 권20 財賦類(1): 經用 권21 財賦類(2): 錢幣, 夢 권22 財賦類(2): 節省, 倉庫 권23 財賦類(2): 戶口, 奴婢 권24 財賦類(1): 貢市 권25 財賦類: 均役 上 권26 財賦類: 均役 下 권25~권26(1) 권27 財賦類(1): 詳定 권15~권27 財賦類(16目)
권28~권33	軍旅類	권28 軍旅類: 軍制 上 권29 軍旅類: 軍制 下 권28~권29(1) 권30 軍旅類(4): 操鍊, 巡綽, 軍器, 戰船 권31 軍旅類(1): 關防 권32 軍旅類(2): 烽燧, 馬政 권33 軍旅類(1): 邊圉 권28~권33 軍旅類(9目)
권34	營繕類	권34 營繕類(3): 城堞, 川渠, 津渡 권34 營繕類(3目)
권35	別考	위의 6類에서 빠진 잡문을 수집한 것

위의 <표 1>에 의하면, 『어정홍익정공주고』는 전체 35권이다. 본서는 34권 6류 59목이고, 35권은 별고이다. 권1~권8은 전례류 21목, 권9~권12는 출척류 7목, 권13~권14는 법기류 3목, 권15~권27은 재부류 16목, 권28~권33은 군려류 9목, 권34는 영선류 3목이며 총 59목이다. 권35는 별고로 본서의 6류에서 빠진 잡문을 수집한 것이다.

이 책의 편집은 정조가 외삼촌 홍낙임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3년이 걸렸다. 이 책은 정조가 편찬을 주도하고 홍낙임이 정조를 도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홍낙임은 정조의 외조부인 홍봉한의 셋째 아들이다. 그의 본관은 풍산(豊山)이고 자는 숙도(叔道)이다. 영조 42년(1766) 12월 9일 승지가 되었다.⁴⁾ 영조 45년(1769) 2월 22일 정언이 되었다.⁵⁾ 동년 8월 19일 문학이 되었다.⁶⁾ 영조 46년(1770) 8월 20일 사서가 되었다.⁷⁾ 동년 12월 23일 교리가 되었다.⁸⁾ 영조 49년(1773) 윤3월 2일 승지가 되었다.⁹⁾ 동년 5월 25일 영의정 김상복이 춘방(春坊)에 합당한 사람으로 민중렬·홍상간·박상갑·서유신·이상준·홍낙임 등을 천거하였다.¹⁰⁾ 영조 52년(1776) 1월 27일 승지가 되었다.¹¹⁾ 그는 정조조에 벼슬에 나가지 않고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일로 보좌하였다. 순조 1년(1801) 신유박해 때 체포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그 해 5월 29일 사사되었다.¹²⁾ 순조 7년(1807) 1월에 복관되었다.¹³⁾

2.2 편찬과정

『어정홍익정공주고』의 편찬과정은 정조의 어찰에 3년의 내용이 모두 실려 있지 않고 정조 23년(1799) 8월부터 정조 24년(1800) 4월까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 4) 『영조실록(英祖實錄)』 107권, 영조 42년 12월 9일 乙巳 2번째 기사.
“以… 洪樂任 ….”
 - 5) 『영조실록(英祖實錄)』 112권, 영조 45년 2월 22일 乙亥 1번째 기사.
“乙亥 以…洪樂任爲正言 ….”
 - 6) 『영조실록(英祖實錄)』 113권, 영조 45년 8월 19일 戊辰 4번째 기사.
“以 … 洪樂任爲文學 ….”
 - 7) 『영조실록(英祖實錄)』 115권, 영조 46년 8월 20일 癸巳 2번째 기사.
“以… 洪樂任爲司書、俞漢謹爲說書、元仁孫爲右參贊.”
 - 8) 『영조실록(英祖實錄)』 115권, 영조 46년 12월 23일 乙未 1번째 기사.
“乙未 以洪樂任爲校理 ….”
 - 9) 『영조실록(英祖實錄)』 120권, 영조 49년 윤3월 2일 辛酉 1번째 기사.
“辛酉 以… 洪樂任爲承旨.”
 - 10) 『영조실록(英祖實錄)』 120권, 영조 49년 5월 25일 癸未 3번째 기사.
“領議政金相福薦可合春坊人閔鍾烈 洪相簡 朴相甲 徐有臣 李商駿 洪樂任等 ….”
 - 11) 『영조실록(英祖實錄)』 127권, 영조 52년 1월 27일 己亥 1번째 기사.
“己亥 以李商駿洪樂任爲承旨.”
 - 12) 『순조실록(純祖實錄)』 3권, 순조 1년 6월 10일 乙卯 1번째 기사.
“乙卯 頒討逆教文 … 乃於五月二十九日 禍及樂任賜死 ….”
 - 13) 『국조보감(國朝寶鑑)』 77 純祖朝 2 丁卯.
“七年 春正月 命復洪樂任官爵.”

첫째, 정조는 『어정홍익정공주고』의 편찬과정에서 외삼촌 홍낙임과 모든 일을 상의하여 진행하였고, 특히 『주고(奏藁)』의 한 편이 완성될 때마다 자신이 직접 지은 서문을 붙이는 일을 계획하고 그 교정도 상세히 상의하였다. 『주고』의 총서(總序)는 홍용한(洪龍漢, 1734~1809)과도 상의하여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조 23년(1799) 8월 7일의 어찰에 의하면, “『주고』는 이미 서늘한 바람이 부니 마음을 집중하여 정성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한편이 완성될 때마다 즉시 들여보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들어오면 즉시 서문을 지을 계획입니다.”라고 하였다.¹⁴⁾ 이는 홍낙임이 한편씩 완성하여 정조에게 보내주면 서문을 지을 계획임을 밝히는 것이다.

정조 23년(1799) 8월 11일의 어찰에 의하면, “『주고』는 행행(行幸) 전에는 실로 착수하기가 어려우므로 제2편 이하는 제가 돌아온 후 들여보내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¹⁵⁾ 이는 정조가 행행을 다녀온 후 제2편 이하를 들여보내라는 부탁을 하는 내용이다.

정조 23년(1799) 8월 18일의 어찰에 의하면, “『주고』 한 권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취야(就也, 洪就榮, 1759~?)에게 들으니 ‘편집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다더군요. 작업을 속히 시작하시는 것이 어떠한지요?”라고 하였다.¹⁶⁾ 정조는 홍낙임에게 홍취영도 편집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묻는 내용이다.

정조 23년(1799) 10월 17일 어찰에 의하면, “저는 올겨울 계획했던 강독 일정을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경황이 없는지 헤아리실 수 있겠지요. 이 때문에 『주고』의 서문을 지으며 단락을 나눠 사실을 기술하는 일들은 감히 구상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고, 이에 보내온 책과 함께 보자기에 싸둔 채 펼쳐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¹⁷⁾ 이는 정조 23년(1799) 10월 17일 정조의 업무가 바빠서 서문의 일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하는 내용이다.

정조 23년(1799) 10월 27일 어찰에 의하면, “저는 며칠 전부터 서문을 찬술하는 일에 유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규범을 세우지 못한 채 일단 개략적인 배치와 주요 골자를 구상했습니다. 통서가 있고, 류서가 있고 각목서가 있는데 모두 합쳐 계산해 보면 통서는 1편, 류서는 7편, 각목서는 53편입니다. 전례중에는 위아래를 맞바꾸어야 하는 부분이 있거니와, 군려조의 용정(戎政)이라는 항목은 범범(泛泛)하면서도 내용과 밀접하지 않을 것 같아 그 이름을 군제로 바꾸었습니다. 이밖에도 미처 다듬지 못한 부분이 많으나 근래의 정력을 돌아보건대 한편으로 열람하고, 한편으로 불러주며

14) 정조, “정조 23년 8월 7일 어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박물관, 2009), 12-13.

“... 奏藁 今既生涼 可以專意致精 自今明始役 而每一篇告竣 必即入送 如何如何 到即撰序計 ...”

15) 정조, “정조 23년 8월 11일 어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박물관, 2009), 12-17.

“... 奏藁 行幸前 固難着手 第二篇二下 還後 入送如何 ...”

16) 정조, “정조 23년 8월 18일 어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박물관, 2009), 40-43.

“... 奏藁一卷 同呈 聞於就也 欲爲割付云 從近始役 如何如何 ...”

17) 정조, “정조 23년 10월 17일 어찰,” 『정조어찰집』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168-169.

“... 此中今冬課讀 尙未始之 可 諒苦無暇隙 以是奏藁弁題之逐段敘事者 姑不敢運意輸思 並與 來本裹袱 亦不展視耳 ...”

받아 적게 하는 것은 더 이상 기약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게다가 작은 항목의 서문(小目序)마다 ‘이에 앞서[先是]’, ‘이에 이르러[至是]’라는 표현이 번다하게 들어 있어 이 때문에 곱절이나 더 수고롭습니다. 원편 중에도 마땅히 교정해야 할 곳이 많지만 일단은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¹⁸⁾ 이에 의하면, 정조는 통서 1편, 류서 7편, 각목서 53편의 개략적인 배치와 주요 골자를 구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조 23년(1799) 11월 23일 어찰에 의하면, “『주고』의 서와 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기까지 하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곁곁 웃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¹⁹⁾ 이는 정조가 서문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정조 23년(1799) 12월 11일 어찰에 의하면, “『주고』의 서와 인은 전고를 인용한 곳이 폭넓고 소재를 취한 것이 심원한 탓에 날마다 붓과 종이를 소모할 뿐 탈고할 기약이 없습니다. 봉모(鳳毛: 자식의 재주가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뒤지지 아니함을 일컫는 말, 흥낙임을 일컬음.)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행여 헛되이 저버릴까 걱정스러워 이에 밤낮으로 부지런히 힘쓰고 있습니다.”라고 하여²⁰⁾ 서문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정조 23년(1799) 12월 24일 가평일(嘉平日: 동지가 지난 후 세 번째의 戌日)의 어찰에 의하면, “백일의 노고와 하루의 은택을 기뻐할 때, 다행히 『주고』의 서문을 완성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심사숙고하고 일정에 맞춰 문장을 짓는 일을 밤낮으로 멈추지 않았더니 정력이 모두 고갈되었습니다.”라고²¹⁾ 하였다. 이 글에 의하면, 정조가 『주고』의 서문을 쓰는 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다.

정조 24년(1800) 4월 27일의 어찰에 의하면, “『주고』와 『유집(遺集)』의 두 서문을 썼습니다.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으실 때를 추억해보면 새벽에 있었던 일처럼 생생한데, 무덤의 나무가 이미 한 움큼이 되었습니다. 지난날을 곰곰이 생각하며 쓰던 글을 덮고 탄식한 것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다만 필력이 졸렬하고 황각(黃閣: 재상 홍봉한을 가리킴)의 광대한 지모를 선양하는 것과 고아한 집사의 훌륭한 부탁에 부응하는 것에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전전긍긍하며 겨우 이렇게 완성하여 보내 드리니, 사정없이 고치고 바로 잡아 큰 문장에 누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천만번 바랍니다.”라고 하였다.²²⁾ 이 글에 의하면, 정조 24년(1800) 4월 27일에 『주고』의 서문을 완성하였고, 흥낙임에게

18) 정조, “정조 23년 10월 27일 어찰,” 『정조어찰첩』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176-177.

“… 此中自數日前 始欲留意於撰序之役 而尚未立定規樞 姑滉漾於排置命意 有統序 有類序 有各目之序 合而計之 統序一 類序七 各目序 五十三 而典禮條 有不得不互換上下者 軍旅條 戒政之目 近於泛而不切 改以軍制 外此則未及淘洗者多 顧今精力 難期其一邊看閱 一邊呼寫 且況每小目序 先是至是句多入 尤以此倍爲勞耳 原編亦多 可合校正處 姑未一一之槩及耳 …”

19) 정조, “정조 23년 11월 23일 어찰,” 『정조어찰첩』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182-183.

“… 奏藁序引 又掛在心頭一邊 還覺呵呵 …”

20) 정조, “정조 23년 12월 11일 어찰,” 『정조어찰첩』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194-195.

“… 奏藁敍引 使事也光 取材也遠 日費鉛槧 汗青無期 鳳毛之託 恐或虛負 以茲夙夜槌槌爾 …”

21) 정조, “정조 23년 12월 24일 嘉平日 어찰,” 『정조어찰첩』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200-203.

“… 奏藁敍幸成百日勞一日澤之時 而積年覃思 趨程摘藻 膏晷相繼 精力俱疲 …”

22) 정조, “정조 24년 4월 27일 어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박물관, 2009), 124-125.

철저한 질정과 교정을 부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조 24년(1800) 4월 27일의 어찰 별지에 의하면, “두 서문을 한 개씩 베껴 장주(長洲, 洪龍漢)에게 보내어 질정을 청했습니다. 근래 나의 정력이 글을 쓸 때 더욱 흐릿하고 몸이 피곤하지만, 외할아버지를 위하여 정성을 더할 기회가 이 한 가지 일에 있으므로 먹을 적서 붓을 다듬으며 깊은 의를 탐색하고 심오한 뜻을 찾았으나 감히 영서연설로 적석보상을 더럽힐 수 없었습니다. 나 스스로 ‘공적으로는 유감이 없지만 나는 할 말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글을 보는 사람 또한 그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그 글과 만족스러운 글씨로 충성이 더욱 잘 드러나길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²³⁾ 이글에 의하면, 정조 24년(1800) 4월 27일에 『주고』의 서문을 한 개씩 베껴 홍용한에게도 질정을 부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조 24년(1800) 4월 28일의 어찰에 의하면, “... 장주의 답장을 받아보니, 또 이렇게 고친 것이 있습니다. 보신 후 어제 보낸 본(本)에 이 초고를 고쳐 써서 돌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두 서문에 ‘奏藁’라고 한 것은 모두 ‘實紀’로 하나하나 바로 잡고, 그 밖에 이 두 서문의 자구가 만약 중첩된 곳이 있으면 취야를 시켜 교정하고 첨지(籤紙)를 붙이게 하여 가까운 날에 들여보내세요. 여기 있는 본에 반영할 생각입니다.”라고 하였다.²⁴⁾ 이 글에 의하면, 정조가 홍용한의 답장을 받아 다시 홍낙임에게 보내 교정에 반영할 것을 부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정조는 홍낙임에게 『어정홍익정공주고』의 교정을 철저하게 하도록 지시하였고, 홍취영이 중간에 도와서 진행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조 23년(1799) 9월 17일의 어찰에 의하면, “『주고』의 교정은 그 사이에 시작하셨는지요?”라고 하였다.²⁵⁾ 이는 정조가 『주고』의 교정을 시작하였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정조 23년(1799) 12월 24일 어찰에 의하면, “다만 자구를 정교하게 다듬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공교로움은 질박함을 살피지 않는 법이나, 질박함을 되돌리는 것은 공교로움의 책무이지요. 그 책무는 집사에게 달려있으니, 바라건대 제가 취사할 수 있게끔 일일이 교정한 뒤 첨지를 붙여 보내주시십시오.”라고 하였다.²⁶⁾ 이는 『주고』의 서문을 완성하고 그에 대한 교정을 홍낙임에게 부탁하는 내용이다.

“... 因於暇隙 締得奏藁遺集二序 追憶撫頂置膝 歷歷如隔晨 而河阡之木已拱矣 規仰疇昔 掩卷而咨嗟者屢 但筆力拙澀 恐無以揄揚黃閣之閔謨 副塞玄晏之盛托 用茲兢兢才完篇 輒塵尊覽 幸有以極意斧斤 俾大文子無闕千萬千萬 ...”

23) 정조, “정조 24년 4월 27일 어찰별지,”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박물관, 2009), 126-131.

“... 兩序各以一本謄送長洲 請以斤教耳 近來吾之靜力 於文字間 尤憤憤弊弊 而爲外王考效誠之方 在此一舉 濡墨春筆 鉤深義 蹟奧旨不敢以郢燕汚赤烏黼裳 吾自以謂在公無憾 在我有辭 見之者亦可許 以得意文得意筆 而公之誠忠 亦得以藉此益彰 未知以爲如何如何 ...”

24) 정조, “정조 24년 4월 28일 어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박물관, 2009), 152-153.

“... 及見長洲復札 又有此釐改者 覽後就昨送本 改書此草 還投如何 諸序中 凡稱奏藁處 並以實紀 逐一釐正 外此與今兩序字句 若有疊用處 即使就也考校 付籤紙 從近入送 則此在本亦當淘洗爲計 ...”

25) 정조, “정조 23년 9월 17일 어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박물관, 2009), 74-75.

“... 奏藁校工 間已就緒耶 ...”

26) 정조, “정조 23년 12월 24일 嘉平日 어찰,” 『정조어찰집』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200-203.

정조 23년(1799) 12월 24일 가평일의 어찰 추신에 의하면, “원고의 편목 중에는 순서를 뒤바꾼 것이 있고, 새롭게 증보한 부분도 있는데, 원본은 아직 탈고하지 못한 초초 건입니다. 모름지기 다시 심혈을 기울여 정밀하게 다듬은 연후라야 열람하는 자의 조롱을 면할 수 있을 테지요. 여러 인(引)의 편차는 한결같이 바로잡은 순서에 따라 만들었습니다.”라고 하였다.²⁷⁾ 이는 원고 초초본의 교정을 정밀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정조 24년(1800) 4월 1일의 어찰에 의하면, “『주고』의 중초(中草)도 가까운 날에 보낼 것입니다.”라고 하였고,²⁸⁾ 동년 4월 19일의 어찰에 의하면, “『주고』는 언제 내보내야 합니까? 나는 근자에 시력을 보호하고 아끼느라 이렇게 하루 종일 책을 보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으며,²⁹⁾ 동년 4월 20일의 어찰에 의하면, “『주고』 중초를 보내드리는데 그 중에서 미처 편찬하지 못한 첫 권은 일단 여기 둡니다.”라고 하였다.³⁰⁾ 이들 3개의 어찰을 보면, 정조 24년(1800) 4월 1일부터 4월 19일, 4월 20일에는 중초본의 교정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 24년(1800) 4월 30일의 어찰에 의하면, “취야의 침지를 보고 고친 것을 보냅니다. 근자에 가뭄 걱정으로 인하여 침지 외에는 상세히 보지 못했으니 일일이 교정하여 알려주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³¹⁾ 정조는 홍취영의 침지만을 체크하고 구체적인 교정은 홍낙임에게 부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어정홍익정공주고』는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홍씨의 뜻에 의해 언문으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 23년(1799) 12월 24일 가평일의 어찰 추신에 의하면, “언문으로 번역한 책을 자궁께서 보고 싶어 하네요. 어떻게 하면 며칠 안에 번역할 수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도 즉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지럽게 쓴 초고만을 가지고 있으니, 보내드린 이 건을 소상히 열람한 뒤 다시 보내주셔야 등서할 수 있습니다. 장주께도 보내어 교정을 청해보는 건 어떨까요?”라고 하였다.³²⁾ 이 글은 정조가 홍낙임에게 혜경궁이 언문 번역책을 보고 싶어 하며 원고의 교정을 홍용한에게 부탁하는

“... 工不視樸 而回樸爲工之責 責在執事 幸一一斤正 付籤回教 以爲去就之地 如何 ...”

27) 정조, “정조 23년 12월 24일 嘉平日 어찰 추신,” 『정조어찰집』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202-205.
“... 原藁篇目中 互換者有之 新增者亦有之 而原本即未脫藁之初草件 更須大肆力淘洗 然後庶免見者之竊笑 諸引之編次 一依釐正第次爲之耳 ...”

28) 정조, “정조 24년 4월 1일 어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박물관, 2009), 116-117.
“... 奏藁中草 亦當從近送之耳 ...”

29) 정조, “정조 24년 4월 19일 어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박물관, 2009), 120-121.
“... 奏藁何當出送耶 吾則近因眼力之 欲護惜 如此永日不敢看書耳 ...”

30) 정조, “정조 24년 4월 20일 어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박물관, 2009), 122-123.
“... 奏藁中草 送呈 而其中未及撰序卷 姑留之耳 ...”

31) 정조, “정조 24년 4월 30일 어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박물관, 2009), 154-155.
“... 就也籤紙改送 而近因悶旱 自多酬應 籤紙外 未能詳看 更望一一斤教耳 ...”

32) 정조, “정조 23년 12월 24일 嘉平日 어찰 추신,” 『정조어찰집』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202-205.
“... 慈宮欲速覽譯之本 何以則數日內可以讎解耶 此亦卽爲量示 如何 此中只有亂草 此送件 詳覽還送 則始可謄書矣 長洲亦送覽以爲斤教之地 如何如何 ...”

것은 어떠한지 의견을 묻는 내용이다.

정조 23년(1799) 12월 25일의 어찰에 의하면, “언문으로 번역하는 일을 모래까지 마칠 수 있으신지요? 이렇게 진행한 연후라야 새해가 되기 전에 일람할 수 있으니, 비단 자궁의 뜻이 이와 같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20여 일을 골골한 끝에 완성했으니 열람할 수 있도록 서둘러 보내고 싶은데 서수(書手)가 과연 정해진 기일까지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라고 하였다.³³⁾ 이 글은 정조가 홍낙임에게 12월 27일까지 번역을 마칠 수 있는지 상의하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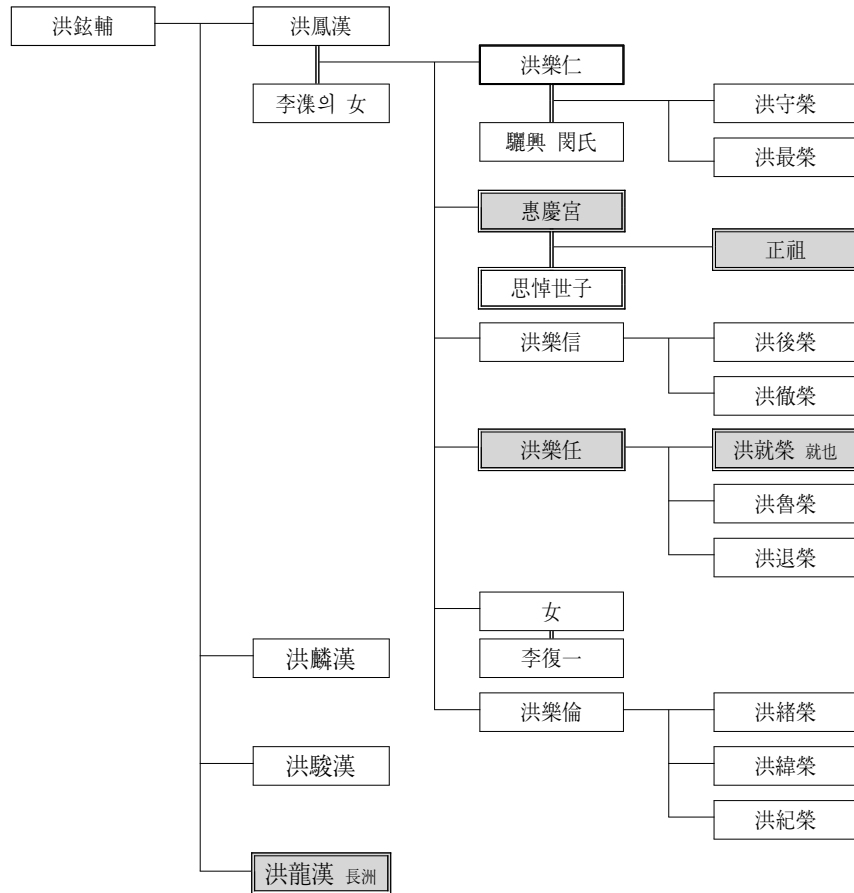
정조 23년(1799) 12월 26일의 어찰에 의하면, “언문으로 번역하는 일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요? 언제쯤 자궁께 올릴 수 있나요?”라고 하였다.³⁴⁾ 이 글은 정조가 홍낙임에게 번역의 진행과 혜경궁한테 언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체크하는 내용이다.

정조 23년(1799) 12월 28일의 어찰에 의하면, “언문으로 번역한 책을 가져온 인편을 통해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번역하는 일이 하늘을 날 듯 신속하게 끝난 것 같으니 매우 다행입니다. 한두 조목을 보니 간혹 소략함을 면치 못하는 부분도 있네요. 마땅히 처음부터 다시 정직하게 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주고』의 원본 가운데 지나치게 비속한 부분은 별도로 필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쯤 할 생각인가요?”라고 하였다.³⁵⁾ 이 글에 의하면, 정조가 홍낙임에게 번역의 속도는 빨랐지만,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것과 『주고』의 원본 가운데 지나치게 비속한 부분은 필삭을 하라고 지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봉한의 『어정홍익정공주고』의 편찬자는 정조와 홍낙임이다. 편찬과 정에서 홍취영³⁶⁾은 정조와 홍낙임 사이에서 진행되는 『어정홍익정공주고』의 편찬을 간접적으로 도왔고, 정조의 작은 외할아버지인 홍용한³⁷⁾은 『주고』의 서문을 질정하는 데 관계하였으며, 언문의 번역에는 혜경궁의 뜻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정홍익정공주고』의 편찬에 관계한 사람들을 <그림 1>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33) 정조, “정조 23년 12월 25일 어찰,” 『정조어찰첩』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204-205.
 “諺役再明間可考完耶 如是然後 歲前可以一閱 不但 慈意如此 以廿餘日汨汨之餘 必欲即速 呈覽 書手果趁期耶.”
- 34) 정조, “정조 23년 12월 26일 어찰,” 『정조어찰첩』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206-207.
 “... 諺役幾許爲之 而何間當入呈耶 ...”
- 35) 정조, “정조 23년 12월 28일 어찰,” 『정조어찰첩』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210-211.
 “諺讞冊入來便 所示亦承悉耳 諺役之飛也似速完 甚幸甚幸 見一二條 或未免疏略 更合從頭淘洗 至於奏藁原本 太俗處 不可不另行筆削 何間欲爲之耶.”
- 36) 홍취영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강순애, “정조가 홍취영에게 보낸 어찰에 나타난 四部手圈 편찬 교정 내용과 관련 기록 연구,” 『서지학연구』 제78집(2019. 6), 130-133에 자세하다.
- 37)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백과대사전, 홍용한(洪龍漢), [검색일자 2020.1.9.]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4280>
 “홍용한(洪龍漢, 1734~1809)은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명여(明汝)이다. 영조 40년(1764) 인일제(人日製)에 뽑히고, 이듬해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정언·부수찬·부응교 등을 지냈다. 영조 48년(1772) 승지에 임명되었고, 영조 52년(1776) 의주부윤을 잠시 지냈다. 정조 18년(1794) 동지돈녕부사에 제수되었으며, 순조 즉위년(1800) 정조가 죽자 종척집사(宗戚執事)에 차임되었다. 홍봉한의 아우이다.”



<그림 1> 홍봉한의 『어정홍익정공주고』의 편찬자 및 관계자

3. 『어정홍익정공주고』의 간행

『어정홍익정공주고』의 간행에 대해서는 『순조실록』 및 『내각일력』 및 현존본에 그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어 기록 및 현존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순조 즉위년(1800) 8월 11일 기사를 보면, 정순왕후가 『어정홍익정공주고』의 간행을 내각에 지시하는 내용이 나온다.

“익정공의 주고는 곧 우리 선대왕께서 직접 손수 편찬하신 것으로 장차 인간하여 세상에 반하하려 했었던 것이다. 내각으로 하여금 즉시 인간하여 올리도록 하라. 그리고 인간이 끝나기를 기다려 그 책을 가지고 익정공의 사우에 치제하게 하라. 이는 바로 대행조의 유의(遺意)를 우러러 몸받는 것이 된다. 하였는데, 익정공은 곧 고 봉조하 홍봉한이었다.”라고 하였다.³⁸⁾

위의 내용에는 『어정홍익정공주고』의 간행과 관련하여 누가 주청한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순조 1년(1801) 5월 25일 기사에 “윤행임이 『어정홍익정공주고』의 간행에 대해 정순왕후가 하교한 내용을 심환지에게 서찰로 알렸다는 내용”이 있고,³⁹⁾ 동년 9월 6일 기사에서는 “이병모·심환지·이시수·서용보가 백관을 거느리고 정청하여 윤행임의 죄를 아뢰는 가운데, 홍론에 빌붙을 때에는 『어정홍익정공주고』의 간행을 힘껏 주장하였다.”는 내용이 있다.⁴⁰⁾ 이들 기사에 근거하면, 윤행임이 『어정홍익정공주고』의 간행을 정순왕후에게 주청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미 정조와 홍낙임에 의해 편집이 완료된 책의 간행에 대한 건의자로 윤행임(尹行恁, 1762~1801)을 지목하는 논문들도 있다.⁴¹⁾

『어정홍익정공주고』의 간행을 주청했던 윤행임은 이후 정조의 뜻을 이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정순왕후의 정책 방향과 다르게 인지되어 신지도(薪智島)로 유배되었다가 임시발(任時發)·윤가기(尹可基) 역변 사건에 연루되어 사사되었다.⁴²⁾

순조 즉위년(1800) 8월 20일 기사를 보면, 『어정홍익정공주고』의 간행을 반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대하였다. 영의정 심환지, 좌의정 이시수, 우의정 서용보 등이 아뢰기를, “듣건대 홍봉한의 주고를 내각으로 하여금 감인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홍봉한이 진 죄범에 대해서는 고 집의 박치룡의 상소, 초야신 한유의 상소, 고 재신 김귀주의 상소, 정이환의 상소, 전 부사 김관주의 상소에서 이미 죄다 열거하여 논했기 때문에 신 등이 감히 다시 진달하지 않겠습니다. 선대왕께서는 하늘에서 타고나신 달효이십니다만, 의리의 제방에 크게 관계되는 곳에 이르러서는 동요되거나 굽힌 적이 없었습니다. 신 등이 이런 때를 당하여 자전의 마음을 위안시켜 드림에 있어 만일 혹 조금이라도 선조 때보다 달리하는 것이 있다면 어찌 이런 불충하고 무상한 신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에 이르러서는 실로 의리에 관계되는 큰 관건이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누누이 전궁에게 우러러 여쭙어 기어이 정지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신 등의 구구한 소망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하고, 대왕 대비는 하교하기를, “이 일은 곧 선조에서 일찍이 유의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인출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급한 일이 아니니 우선 보아가면서 하는 것도 해롭지 않겠다.”고 하였다.”⁴³⁾

38) 『순조실록(純祖實錄)』 1권, 순조 즉위년 8월 11일 辛酉 3번째 기사.

“敎曰 翼靖公奏藁 卽我大行朝親自手編 而行將印頒于世者也 令內閣 卽爲印進 待畢印 以其書致祭于翼靖公祠宇 此是仰體大行朝遺意也 翼靖公 卽故奉朝賀洪鳳漢也.”

39) 『순조실록(純祖實錄)』 3권, 순조 1년 5월 25일 庚子 3번째 기사.

“次對… 煥之曰 臣今所奏 雖近細瑣 而亦所憤惋者 故敢此仰達矣 洪鳳漢奏稿之當初下敎也, 渠書報於臣曰 渠則不知金祖淳奉承之云 臣以洪樂佐添書事 有書於渠曰 先朝雖有一二添書事, 而此固出於久道化成一時權宜之政 而今於嗣服之初 恐不當也 云云 則渠以爲 渠與金祖淳 則初不知之 而朴宗輔奉承書出云 以此推之 指東指西 變亂說話 疑眩人心者 類皆如是 豈不萬萬憤痛乎 今若置之 則豈可曰國有法乎 …”

40) 『순조실록(純祖實錄)』 3권, 순조 1년 9월 6일 庚辰 3번째 기사.

“領府事李秉模、領議政沈煥之 左議政李時秀 右議政徐龍輔 率百官 庭請啓言 臣等以尹行恁 … 附凶論則力主奏稿之役 …”

41) 노대환, “윤행임(1762~1801)의 정치 활동과 학문 성향,” 『국학연구』 19(2011), 293.

최성환, “조대 전반기 정국 변동과 의리론의 추이,” 『한국사연구』 80(2018. 3), 120.

42) 『순조실록(純祖實錄)』 3권, 순조 1년 9월 10일 甲申 2번째 기사.

“大王大妃敎曰 遭時多艱 夙夜憂懼 意外逆變 又何層出 … 發 基枝葉也 行恁根本也 … 薪智島島配罪人 尹行恁賜死 …”

위의 내용을 참조하면, 영의정 심환지, 좌의정 이시수, 우의정 서용보 등이 홍봉한이 진 죄범에 대해서 박치룡, 한유, 김귀주, 정이환, 김관주의 상소에서 다 열거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고, 돌아가신 정조대왕이 의리(義理)의 제방에 관해서는 양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어정홍익정공주 고』의 간행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자, 대왕대비는 이는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하여 일단 간행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는 ‘정조대왕의 의리’는 정조 24년(1800) 5월 30일 탕평정치의 추진을 위한 자신의 통치술을 천명한 정조의 하교를 가리킨다. 통상적으로 ‘오회연교(五晦筵教)’라고 한다. 정조는 이를 통해 정치 원칙이 시대에 따라 가변(可變)하는 것이라고 하여 기존의 노론 중심의 정치 원칙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차기 재상은 남인 강경파 중에서 나올 것임도 암시하였다. 특히 사도세자를 모해한 공홍파(攻洪派)의 행동은 역절(逆節)이 분명하지만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시인한다면 용서해 주겠다는 뜻을 피력하였다.⁴³⁾ 하지만 정조는 이 의리를 천명한 지 한 달이 되기도 전인 정조 24년(1800) 6월 28일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순조를 대신하여 수렴청정을 시작한 정순왕후는 정조의 인산(因山)이 지나가고 우제(虞祭)와 졸곡(卒哭)이 지나자 순조 즉위년(1800) 12월 18일 연교 1통을 내리고 영조의 임오의리에 대해 강조하였다.⁴⁵⁾

이어 정순왕후는 ‘영조의 대의리’를 기준으로 하면서 정조의 갑자년 구상이 전제하고 있던 추왕론을 전면 부정하고, 정조의 의리는 영조의 대의리와 같다고 강변하였다. 이들의 배척 대상은 영조의 대의리에 위배된다고 하는 노론 소론 추시파계(追時派系) 토역론자들과 남인 추왕논자(追王論者)들에게 집중되었다⁴⁶⁾ 이들의 배후로 은언군 인과 홍낙임이 지목되었고, 황사영 백서 사건에 이들의 주변 인물이 연루되자 결국 사학(邪學)의 괴수라는 죄목까지 씌워 순조 1년(1801) 5월 29일에 사사되었다.⁴⁷⁾ 순조 4년(1804) 정순왕후를 대신해서 순조의 친정(親政)이 시작되었고, 박준원, 김조순

43) 『순조실록(純祖實錄)』 1권, 순조 즉위년 8월 20일 庚午 1번째 기사.

“庚午 次對 領議政沈煥之 左議政李時秀 右議政徐龍輔等奏曰 聞洪鳳漢有奏稿 令內閣監印云 此何事也 洪鳳漢負犯之罪 故執義朴致隆之疏 草野臣韓鎰之疏 故宰臣金龜柱之疏 鄭履煥之疏 前府使金觀柱之疏 已盡臚列 臣不敢更陳 而以先大王出天之達孝 至於大關義理隄防處 未嘗撓屈 臣等當此時 其所慰安慈心者 若或少異於先朝時 則豈有如許不忠無狀之臣乎 至於此事 實係義理之大關 不敢不如是縷縷仰稟殿宮 期於停止 是臣區區之望也 上曰 本事 予已知之矣 大王大妃教曰 此事 卽先朝所嘗留意者 故欲印出 而此非時急之事 姑觀亦不妨矣.”

44)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서울: 푸른역사, 2001), 26.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2, (서울: 아름다운날, 2007), 252.

45) 『순조실록(純祖實錄)』 1권, 순조 즉위년 12월 18일 丙寅 1번째 기사.

“丙寅 次對 大王大妃教曰 次對之進定於今日者 將有洞諭之事也 卿等詳細承聽 一心對揚 以扶我孤危之國勢也 仍下諺教一通曰 ….”

46) 최성환, “조대 전반기 정국 변동과 의리론의 추이,” 『한국사연구』 80(2018. 3), 116-117.

47) 『순조실록(純祖實錄)』 3권, 순조 1년 6월 10일 乙卯 1번째 기사.

“乙卯/領討逆教文 … 祖豈意魯 衛之近親 潛懷淪倫之異志 兩朝特置崇秩 罔念圖報之方 頃年薄竄炎荒 全無畏罪之意 締結當國之柄相 將欲何爲 嘯聚嗜利之凶徒 恣行不法 某樣道理之章 榮 德逞移國之手 顧瞻他日之供 宇 慙作結婚之階 後先講張 表裏排布 聲氣臭味之若不相合 情節脈絡之昭然交符 莫不以逆祖爲凶窩 視逆祖爲奇貨 漢賊不兩立 神人所共誅 樂任 天生孔壬 世濟元惡 時有嚴公子之目 席父勢而盜弄朝權 罪浮南小人之奸 變國是而戕害善類 自知見棄於清議 角立門庭 深譚則哲之聖聽 力抗君父 王府之鐵案昭載 國人之輿憤沸騰 然

및 혜경궁의 뜻을 받들어 벽파의 처벌이 시도되었으며, 정순왕후는 순조 5년(1805) 1월 12일에 승하하였고,⁴⁸⁾ 홍낙임은 순조 7년(1807) 1월에 복관되었다.⁴⁹⁾

『어정홍익정공주고』의 간행에 대한 일이 언제 다시 논의되었는지 실록에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참고 될 만한 내용들이 있다. 순조 8년(1808) 11월 29일 홍봉한의 집에 승지를 보내 치제하고 홍세주(洪世周)에게 승후하라 명하였고,⁵⁰⁾ 순조 9년(1809) 1월 17일 홍봉한의 넷째 아들 홍낙윤(洪樂倫, 1750~1813)이 홍봉한을 신원하는 상소를 올렸다.⁵¹⁾ 순조 12년(1812) 7월 20일 승지를 보내 봉조하에게 치제하였다.⁵²⁾ 이들 기록들을 참조하면, 늦어도 순조 12년 이후에는 『어정홍익정공주고』의 간행이 재논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순조는 15년(1815) 3월 6일 간행의 일을 마치자 숙직하는 규장각의 각신으로 하여금 홍봉한의 장손주인 홍세주를 불러 일일이 수효를 맞추어 보고 홍봉한에게 치제하도록 하였다.⁵³⁾

규장각본 1146 『어정홍익정공주고』를 참조하면, 이 책은 35권 18책으로 판식은 ‘四周雙邊, 半葉匡郭 22.6×15.7cm 10行20字 注雙行, 上黑魚尾 ; 33.4×21.2cm.’이다. 이 책은 순조 15년(1815) 3월 6일 초주정리자로 인출되었다.

이 활자는 정조가 화성의 행궁의 현릉원(顯隆園)에서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베풀고 그때의 기록인 『원행을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를 찍어내고자 생생자(生生字)를 자본으로 동활자의 주조를 시작하여 이듬해인 정조 20년(1796)에 완성되었다. 큰 자가 16만자, 작은 자가 14만자이다.⁵⁴⁾ 이 중 큰 자는 넓적하고 글자획이 굵은 인서체인 것이 특징이고, 작은 활자는 오늘날의 인서체

猶大德曰生 久矣曲貸其死 沁城近島 至許與妻孥同居 敦府華銜 有若待威晚故事 縱大聖因心之友 常欲源源而來 伊群凶聚首之謀 奈彼眈眈而視 眇予小子 叨承丕基 惟耿耿一心 思繼志述事之義 每悚焉四顧 有臨深履薄之憂 于斯時也 亂本假息王畿 凶魁讎視宗國 崩天之擲 切謂機會之可乘 揭日之義莫嚴 欲漫漶而乃已 誑愚氓而鼓左道 安知無白蓮 黃巾 矯先旨而亂清朝 殆甚於蒼蠅貝錦 忍見箕封禮義之俗 自乖倫常 不意奎壁密邇之班 又出妖孽 假托洋胡之設教 窩窟直接其家人 引喻漢 文之少恩 肝腑如見於筵席 今若當斷而不斷 有非期刑于無刑 惟我慈聖 夙著周 太姜胥字之功 誕敷宋 宣仁垂簾之治 永念滋蔓之禍 渙發如絳之言 其奈罪惡之貫盈 深軫恩法之輕重 一國皆曰可殺 三尺不容久稽 乃於五月二十九日 祔及樂任賜死 …”

48) 『순조실록(純祖實錄)』 7권, 순조 5년 1월 12일 丁酉 3번째 기사.

“午時 大王大妃 昇遐于景福殿.”

49) 『순조실록(純祖實錄)』 10권, 순조 7년 1월 27일 己巳 1번째 기사.

“己巳 命賜死罪人洪樂任復官爵 …”

50) 『순조실록(純祖實錄)』 11권, 순조 8년 11월 29일 庚寅 2번째 기사.

“教曰 今番變怪後 一欲下教 而今始爲之矣 … 洪奉朝賀家 來月初四日 遣承旨致祭 祭文當親撰以下矣 … 司正洪世周使之申飭 頻頻承候 …”

51) 『순조실록(純祖實錄)』 12권, 순조 9년 1월 17일 丁丑 1번째 기사.

“丁丑 同敦寧洪樂倫疏 …”

52) 『순조실록(純祖實錄)』 16권, 순조 12년 7월 20일 庚寅 1번째 기사.

“庚寅 遣承旨 致祭于故奉朝賀洪鳳漢.”

53) 『내각일력(內閣日曆)』 순조 15년 3월 초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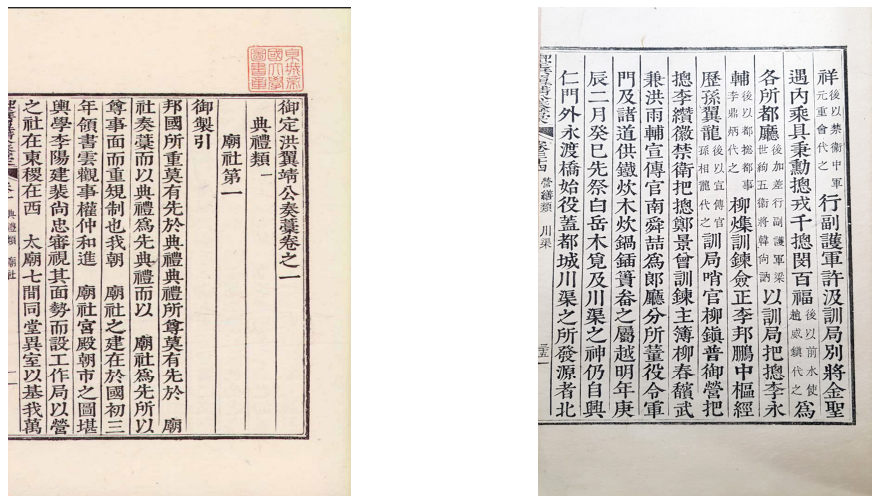
“以承傳色口傳 下教曰洪翼靖公奏稿既已畢役 入直閣臣招致洪世周 一一照數 傳給致祭 從當爲之 以此知悉.”

54) 『정조실록(正祖實錄)』 44권, 정조 20년 3월 17일 癸亥 4번째 기사.

“整理鑄字成 … 壬子命倣中國四庫書 聚珍板式取字典字本 木用黃楊 刻成大小三十二萬餘字 名曰生生字 乙卯整

를 방불케 할 정도로 정교하고 해정하다.⁵⁵⁾ 이 활자의 대표적인 판본은 정조 19년(1795)에 『원행음묘 정리의계』 초인본의 인행을 시작으로, 정조 21년(1797)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정조 22년(1798) 『두율분운(杜律分韻)』, 순조 14년(1814) 『홍재전서(弘齋全書)』 등이 있으며 철종 9년(1858) 제주정리자 주조 이전까지 사용되었다.

『어정홍익정공주고』는 순조 15년(1815)에 간행되었는데 초인본처럼 인쇄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그림 2> 참조).



좌: 『어정홍익정공주고』 권1 전면 정리자 큰자 우: 『어정홍익정공주고』 권35 전면 정리자 큰자와 작은자

<그림 2> 규1146 『어정홍익정공주고』 권1 전면 정리자 큰자,
『어정홍익정공주고』 권35 전면 정리자 큰자와 작은자

당시 정리자 인출에 사용된 책지는 분당지(粉唐紙) 3건, 모면지(毛面紙) 1건, 별대장지(別大壯紙) 1건, 회지(檜紙) 1건, 남책지(南冊紙) 1건, 옥책지(玉冊紙) 1건, 백면지(白綿紙) 10건, 백지(白紙) 180건이다.⁵⁶⁾

또한 혜경궁이 간행을 담당한 간역, 서리, 사령, 방직, 군사, 공장들에게 약간의 물자를 사급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혜경궁에서 간역(看役) 이흥윤(李興潤)에게 분홍저포(粉紅苧布) 1필, 남정주(藍鼎紬) 1필, 백토주(白土紬) 1필, 백세목(白細木) 1필, 수침(綉枕) 1부, 서리(書吏) 김의현(金義鉉), 박운묵(朴允默), 임득명(林得明), 유태훈(劉泰勳)에게 각각 목(木) 2필, 포(布) 1필, 사령(使令) 2명에게 각각 목(木) 1필, 방직(房直) 4명과 군사(軍士) 2명에게 각각 포(布) 1필, 공장(工匠) 16명에게 각각 목(木) 1필,

理儀軌及園幸定例等書 將編次印行 命以生生字爲本 範銅鑄字大小竝三十餘萬 名之曰整理字 藏于奎瀛新府.”
55) 천혜봉, 『한국 금속활자 인쇄사』 (서울: 범우사, 2012), 304.

56) 『내각일력(內閣日曆)』 순조 15년 3월 초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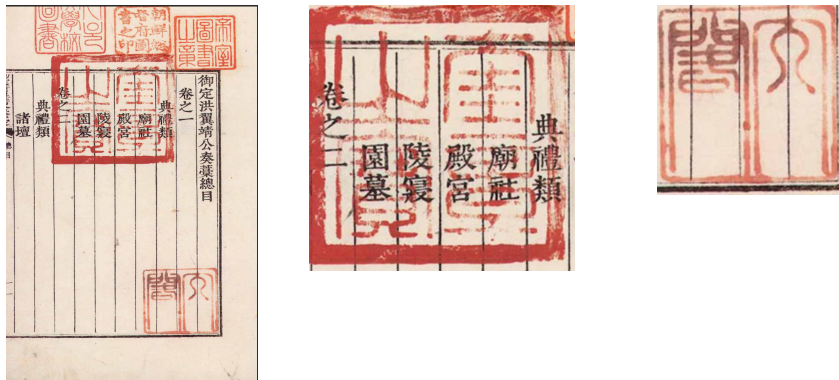
“粉唐紙三件 毛面紙一件 別大壯紙一件 檜紙一件 南冊紙一件 玉冊紙一件 白綿紙十件 白紙一百八十件 傳給後請司 謁入稟.”

포(布) 1필이 하사되었다.⁵⁷⁾

4. 『어정홍익정공주고』의 반사

순조는 15년(1815) 3월 6일 『어정홍익정공주고』의 간행이 끝나자 바로 반사하도록 하였다.⁵⁸⁾ 반사하는 책자에는 ‘奎章之寶’를 날인하도록 하여⁵⁹⁾ 오쳐사고, 규장각, 내각, 옥당, 춘방에는 백면지로 찍은 책을 각각 1건씩 반사하였고, 원임제학 영의정 김재찬, 원임직제학 판부사 서용보, 검교제학 김조순, 원임제학 이만수, 심상규, 제학 남공철, 서영보, 원임제학 박종경, 직제학 이준수, 원임직제학 홍석주, 직제학 김이교, 검교직각 이노익, 원임직각 박주수, 검교직각 서준보, 이광문, 정원용, 검교대교 박종훈, 이용수, 원임대교 박기수, 검교대교 이학수에게 백지로 찍은 책을 각각 1건씩 사급하였다.⁶⁰⁾

반사본 중에는 현존본이 일부 남아 있어 참고할 수 있다. 규장각본 1146 『어정홍익정공주고』에는 ‘奎章之寶’와 ‘內閣’ 장서인이 찍혀 있어 내각에 반사한 책임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규1146 『어정홍익정공주고』 총목 권1 권수제면 및 ‘奎章之寶’·‘內閣’ 장서인

57) 『내각일력(內閣日曆)』 순조 15년 3월 초6일.

“賞格別看役李興潤粉紅苧布一疋 藍鼎袖一疋 白土袖一疋 白細木一疋 綉枕一部 書吏金義鉉 朴允默 林得明 劉泰勳 各木二疋 布一疋 使令二名 各木一疋 房直四名 軍士二名 各布一疋 工匠十六名 各木一疋 布一疋 自惠慶宮差備內下.”

58) 『순조실록(純祖實錄)』 18권, 순조 15년 3월 6일 壬辰 1번째 기사.

“壬辰 命頒翼靖公 洪鳳漢奏藁 卽 先朝御定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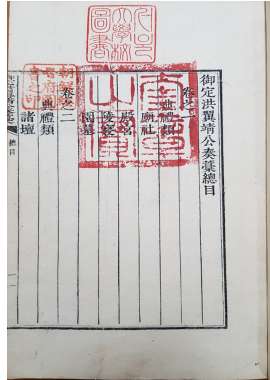
59) 『내각일력(內閣日曆)』 순조 15년 3월 초6일.

“本閣啓曰 頒賜冊子安寶次 奎章之寶 請出之意 敢啓 答曰知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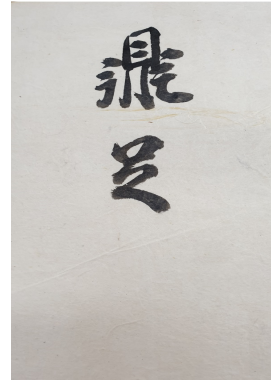
60) 『내각일력(內閣日曆)』 순조 15년 3월 초6일.

“備忘記 御定洪翼靖公奏稿 五處史庫外 奎章閣 內閣 玉堂 春坊 各白綿紙一件 原任提學領議政金載瓚 原任直提學判府事徐龍輔 檢校提學金祖淳 原任提學李晚秀 沈象奎 提學南公轍 徐榮輔 原任提學朴宗慶 直提學李存秀 原任直提學洪興周 直提學金履喬 檢校直閣李魯益 原任直閣朴周壽 檢校直閣徐俊輔 李光文 鄭元容 檢校待教朴宗薰 李龍秀 原任待教朴綺壽 檢校待教李鶴秀 各白紙一件 賜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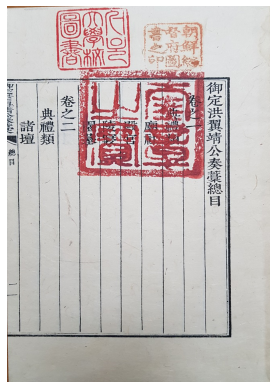
규장각본 3915 『어정홍익정공주고』에는 ‘奎章之寶’ 장서인과 표지 이면에 ‘鼎足’의 묵서기가 있고, 규장각본 1924 『어정홍익정공주고』에는 ‘奎章之寶’ 장서인과 표지 이면에 ‘太白’의 묵서기가 있어 각각 정족산사고와 태백산사고에 반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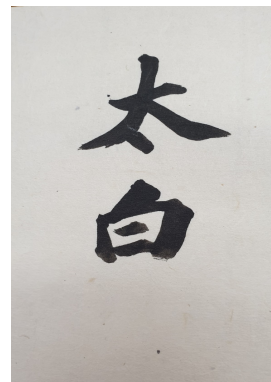
상좌: 규3915 『어정홍익정공주고』
총목 권1 권수제면
‘奎章之寶’



상우: 규3915 『어정홍익정공주고』 표지이면
‘鼎足’



하좌: 규1924 『어정홍익정공주고』
총목 권1 권수제면
‘奎章之寶’



하우: 규1924 『어정홍익정공주고』 표지이면
‘太白’

<그림 4> 규3915 『어정홍익정공주고』 총목 권1 권수제면 ‘奎章之寶’ 및 표지이면 ‘鼎足’,
규1924 『어정홍익정공주고』 총목 권1 권수제면 ‘奎章之寶’ 및 표지이면 ‘太白’

규장각본 1173 『어정홍익정공주고』에는 ‘奎章之寶’와 ‘奎書珍籍’ 장서인이 찍혀 있어 규장각에 반사한 책임을 알 수 있다(<그림 5> 참조).



<그림 5> 규1173 『어정홍익정공주고』 총목 권1 권수제면 및 ‘奎章之寶’·‘奎書珍籍’ 장서인

5. 결 론

『어정홍익정공주고』의 편찬, 간행 및 반사에 대해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조는 주자가 편집한 축확의 『축공유사』를 모방하여 『어정홍익정공주고』 6류, 59목, 별고 1편으로 구성하였다. 현존본 『어정홍익정공주고』는 35권이다. 본서는 34권 6류 59목이고, 35권은 별고이다. 권1~권8은 전례류 21목, 권9~권12는 출척류 7목, 권13~권14는 법기류 3목, 권15~권27은 제부류 16목, 권28~권33은 군려류 9목, 권34는 영선류 3목이며 총 59목이다. 권35는 별고로 본서의 6류에서 빠진 잡문을 수집한 것이다. 이 책의 편찬자는 정조와 홍낙임이고, 편찬기간은 3년이 었다.

2) 『어정홍익정공주고』의 편찬과정은 정조의 어찰에 3년의 내용이 모두 실려 있지 않고 정조 23년(1799) 8월부터 정조 24년(1800) 4월까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정조는 『어정홍익정공주고』의 편찬과정에서 외삼촌 홍낙임과 모든 일을 상의하여 진행하였고, 특히 『주고』의 한 편이 완성될 때마다 자신이 직접 지은 서문을 붙이는 일을 계획하고 그 교정도 상세히 상의하였다. 『주고』의 총서는 홍용한과도 상의하여 진행하였다. 『어정홍익정공주고』의 교정은 홍낙임에게 철저하게 하도록 지시하였고, 홍취영이 중간에 도와서 진행하였다. 이 책은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뜻에 의해 언문으로 번역되었다.

3) 『어정홍익정공주고』의 간행은 순조 즉위년(1800) 8월 11일 정순왕후의 명으로 내각에 간행을 지시했지만, 그해 8월 20일 벽과 신료들의 반대로 미루어졌다. 순조 12년(1812) 이후에 재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순조 15년(1815) 3월 6일 내각에서 정리자로 인출되었다.

4) 순조는 15년(1815) 3월 6일 『어정홍익정공주고』의 간행이 끝나자 반사하는 책자에 ‘奎章之寶’

를 찍어서 오쳐사고, 규장각, 내각, 옥당, 춘방에는 백면지로 찍은 책을 각각 1건씩 반사하였고, 원임제학 영의정 김재찬을 포함하여 20명의 신하에게 백지로 찍은 책을 각각 1건씩 사급하였다. 반사본 중에는 현존본도 남아 있어 참고할 수 있다. 규장각본 1146 『어정홍익정공주고』에는 ‘奎章之寶’와 ‘內閣’ 장서인이 찍혀 있어 내각에 반사한 책임을 알 수 있다. 규장각본 3915 『어정홍익정공주고』에는 ‘奎章之寶’ 장서인과 표지 이면에 ‘鼎足’의 묵서기가 있고, 규장각본 1924 『어정홍익정공주고』에는 ‘奎章之寶’ 장서인과 표지 이면에 ‘太白’의 묵서기가 있어 각각 정족산사고와 태백산사고에 반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규장각본 1173 『어정홍익정공주고』에는 ‘奎章之寶’와 ‘奎書珍籍’ 장서인이 찍혀 있어 규장각에 반사한 책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어정홍익정공주고』의 편찬자와 편찬과정, 간행 및 반사에 대해 여러 기록들을 연계하여 분석 종합함으로써 서지학, 기록관리학 및 역사학 분야에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들을 얻었다. 이 결과는 영·정조 시대의 문헌사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기초적인 데이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순애. “정조가 홍취영에게 보낸 어찰에 나타난 四部手圈 편찬 교정 내용과 관련 기록 연구.” 『서지학연구』 제78집(2019. 6). 127-148.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박물관, 2009.

『국조보감(國朝寶鑑)』 77 순조조 2 정묘.

김덕수. “『정조어찰첩』을 통해서 본 정조의 서적 편찬 활동.” 『정조어찰첩: 『壬辰睿札』과 『己未御札』』.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18-34.

『내각일력(內閣日曆)』 순조 15년 3월 초6일.

노대환. “윤행임(1762~1801)의 정치 활동과 학문 성향.” 『국학연구』 19(2011). 277-311.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서울: 푸른역사, 2001.

『순조실록(純祖實錄)』 1권, 순조 즉위년 8월 11일(辛酉).

『순조실록(純祖實錄)』 1권, 순조 즉위년 8월 20일(庚午).

『순조실록(純祖實錄)』 1권, 순조 즉위년 12월 18일(丙寅).

『순조실록(純祖實錄)』 3권, 순조 1년 5월 25일(庚子).

『순조실록(純祖實錄)』 3권, 순조 1년 6월 10일(乙卯).

『순조실록(純祖實錄)』 3권, 순조 1년 9월 10일(甲申).

『순조실록(純祖實錄)』 7권, 순조 5년 1월 12일(丁酉).

『순조실록(純祖實錄)』 10권, 순조 7년 1월 27일(己巳).

『순조실록(純祖實錄)』 11권, 순조 8년 11월 29일(庚寅).

- 『순조실록(純祖實錄)』 12권, 순조 9년 1월 17일(丁丑).
『순조실록(純祖實錄)』 16권, 순조 12년 7월 20일(庚寅).
『순조실록(純祖實錄)』 18권, 순조 15년 3월 6일(壬辰).
『영조실록(英祖實錄)』 107권, 영조 42년 12월 9일(乙巳).
『영조실록(英祖實錄)』 112권, 영조 45년 2월 22일(乙亥).
『영조실록(英祖實錄)』 113권, 영조 45년 8월 19일(戊辰).
『영조실록(英祖實錄)』 115권, 영조 46년 8월 20일(癸巳).
『영조실록(英祖實錄)』 120권, 영조 49년 윤3월 2일(辛酉).
『영조실록(英祖實錄)』 120권, 영조 49년 5월 25일(癸未).
『영조실록(英祖實錄)』 127권, 영조 52년 1월 27일(己亥).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2. 서울: 아름다운날, 2007.
『정조실록(正祖實錄)』 44권, 정조 20년 3월 17일(癸亥).
최성환. “순조대 전반기 정국 변동과 의리론의 추이.” 『한국사연구』 80(2018). 113-153.
천혜봉. 『한국 금속활자 인쇄사』. 서울: 범우사, 201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정조어찰첩: 『壬辰睿札』과 『己未御札』』.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백과대사전, 홍용한(洪龍漢), [검색일자 2020.1.9.]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4280>>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e, Seong-hwan. 2018. “Political situation and the trend of righteousness in the first half of the King Sun-jo Era.” *The Journal of Korean History*, 80: 113-153.
Chon, Hye-bong. 2012. *The History of Korean Metal Type Printing*. Seoul: Bumwoosa.
Gugjobogam, Vol. 77, Sunjojo 2, Jeongmyo.
Jangseogak Archives of AKS. 2013. *Jeongjo's Eochalcheop: Imjim's letters and Gimi's letters*. Seongnam: AKS Press.
Jeongjosillok, Vol. 44, Jeongjo 20 March 17, Gyeheae.
Kang, Soon Ae. 2019. “A Study of the Compilation and Proofreading of Sabusugwon as Recounted in Jeongjo's Letters to Hong Chui-yong.”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8: 127-148.

- Kim, Deok-soo. 2013. "Activities of Publishing Books through Jeongjo's letters." *Jeongjo's Eochalcheop: Imjim's letters and Gimi's letters* (pp. 18-34). Seongnam: AKS Press.
- Lee, Song-Mu. 2007. *The History of Political Parties in Joseon Dynasty 2*. Seoul: Arumbook.
- Naegagillyeok*, Sunjo 15 March 6.
- National Museum of Korea. 2009. *Jeongjo's Letters House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Seoul: National Museum of Korea.
- Noh, Dae-hwan. 2011. "Yoon Haeng-im's Political Activities and Academic Views." *Korean Studies*, 19: 277-311.
- Park, Kwang-Yong. 2001. *The Kingdom of King Yeongjo and Jeongjo*. Seoul: Purunyoksa.
- Soonjosillok*, Vol. 1, Sunjo Jeugwinyeon August 11, Sinyu.
- Soonjosillok*, Vol. 1, Sunjo Jeugwinyeon August 20, Gyeonggo.
- Soonjosillok*, Vol. 1, Sunjo Jeugwinyeon December 18, Byeongin.
- Soonjosillok*, Vol. 3, Sunjo 1 May 25, Gyeongja.
- Soonjosillok*, Vol. 3, Sunjo 1 June 10, Eulmyo.
- Soonjosillok*, Vol. 3, Sunjo 1 September 10, Gabsin.
- Soonjosillok*, Vol. 7, Sunjo 5 January 12, Jeongyu.
- Soonjosillok*, Vol. 10, Sunjo 7 January 27, Eulsa.
- Soonjosillok*, Vol. 11, Sunjo 8 November 29, Gyeongin.
- Soonjosillok*, Vol. 12, Sunjo 9 January 17, Jeongchug.
- Soonjosillok*, Vol. 16, Sunjo 12 July 20, Gyeongin.
- Soonjosillok*, Vol. 18, Sunjo 15 March 6, Imjin.
- Yeongjosillok*, Vol. 107, Yeongjo 42 December 9, Eulsa.
- Yeongjosillok*, Vol. 112, Yeongjo 45 February 22, Eulhae.
- Yeongjosillok*, Vol. 113, Yeongjo 45 August 19, Mujin.
- Yeongjosillok*, Vol. 115, Yeongjo 46 August 20, Gyesa.
- Yeongjosillok*, Vol. 120, Yeongjo 49 Yoon March 2, Sinyu.
- Yeongjosillok*, Vol. 120, Yeongjo 49 May 25 Gyemi.
- Yeongjosillok*, Vol. 127, Yeongjo 52 January 27 Gihae.